

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

인증번호	제	호	
치유농업시설명	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대표 프로그램명 (목적·대상)			
대표자		생년월일	
소재지(주소)			
인증의 유효기간	년	월	일부터 년 월 일까지

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
위와 같이 우수 치유농업시설을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농촌진흥청장 직인

유의사항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인증이 취소됩니다.
- 인증 받은 자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인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-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은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.